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3. . . (제 회)	

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
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일부 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조규홍 (보건복지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를 마칩

1. 의결주문

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했다고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분만(分娩)에 따른 의료사고의 피해 보상 사업에 드는 비용을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등에게 분담시키지 않는 내용으로 「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(법률 제19458호, 2023. 6. 13. 공포, 12. 14. 시행)됨에 따라,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등에 대한 분만 의료사고의 피해 보상 사업에 드는 비용의 분담 비율, 산정·부과의 방법 및 절차 등의 규정을 법률의 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삭제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3. 10. 5. ~ 11. 14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

음

대통령령 제 호

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제2항제1호 중 “「제조물책임법」”을 “「제조물 책임법」”으로 한다.

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1조(보상재원의 관리·운영) 조정중재원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의료사고 보상사업(이하 “의료사고 보상사업”이라 한다)에 드는 비용을 일반 예산과는 독립된 계정으로 관리·운영해야 한다.

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의료사고 보상사업(이하 “의료사고 보상사업”이라 한다)”을 “의료사고 보상사업”으로 한다.

제27조제3항 후단 중 “국민건강보험공단”을 “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(이하 “국민건강보험공단”이라 한다)”으로 한다.

제31조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3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6조(조정결정 후의 절차) ① (생략)</p> <p>② 법 제36조제5항에 따른 안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신청인에게 송달하는 방식으로 한다.</p> <p>1. 「<u>제조물책임법</u>」 등 피해구제의 근거가 되는 법령</p> <p>2. ~ 4. (생략)</p>	<p>제16조(조정결정 후의 절차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「<u>제조물 책임법</u>」 ----- -----</p> <p>2. ~ 4. (현행과 같음)</p>
<p><u>제21조(보상재원의 분담비율 등)</u></p> <p>① <u>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드는 비용(이하 이 조에서 “분담금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담한다.</u></p> <p>1. <u>국가: 100분의 70</u></p> <p>2. <u>보건의료기관개설자 중 분만(分娩) 실적이 있는 자: 100분의 30</u></p> <p>② <u>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1항제2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개설자별로 분담해야 할 비용을 산정·부과한다.</u></p>	<p><u>제21조(보상재원의 관리·운영)</u></p> <p><u>조정중재원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의료사고 보상사업(이하 “의료사고 보상사업”이라 한다)에 드는 비용을 일반 예산과는 독립된 계정으로 관리·운영해야 한다.</u></p>

③ 원장은 제2항에 따라 산정된 비용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 및 징수일을 징수일 1개월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. 이 경우 법 제46조제4항에 따라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(이하 “국민건강보험공단”이라 한다)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도 그 비용 및 징수일을 징수일 1개월 전까지 알려야 한다.

④ 조정중재원은 분담금을 일반 예산과는 독립된 계정으로 관리·운영하여야 한다.

제22조(보상의 범위)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의료사고 보상사업(이하 “의료사고 보상사업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사고를 대상으로 실시한다.

1. ~ 3. (생략)

제27조(보건의료기관개설자의 대불비용 부담 등) ①·② (생략)

③ 원장은 제2항에 따라 산정된

제22조(보상의 범위) 의료사고 보상사업-----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제27조(보건의료기관개설자의 대불비용 부담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
대불비용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 및 징수일을 징수일 1개월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. 이 경우 법 제47조제4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도 그 비용 및 징수일을 징수일 1개월 전까지 알려야 한다.

④ ~ ⑥ (생략)

제31조(규제의 재검토) 보건복지

부장관은 제21조제1항에 따른 보상재원의 분담비율이 적절한지를 2019년 4월 8일까지 검토하여 분담비율의 조정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-----.

-----.

④ ~ ⑥ (현행과 같음)

<삭 제>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2 - 2474